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외위해제품의 지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11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8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5.
3. 회부연월일 : 2025. 9.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및 수거·파기·교환 등의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국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직접구매 해외제품 및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3조제4호 신설), ②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
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
며, ③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4. <u>“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u>
<u><신설></u>	제16조의2(해외위해제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u>

현행	개정안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해외위해제품의 지정,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로 해외직구 시장의 규모가 확대¹⁾²⁾됨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국내안전기준에 부적합한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1)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액 : ('21년) 5조 2,574억원 → ('22년) 5조 9,454억원 → ('23년) 6조 6,819억원 → ('24년) 7조 9,583억원(잠정치) (출처: 통계청 온라인 쇼핑동향)

2) 특히,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함.
 - 종합몰 앱 국내 사용자수('24.3월) : 쿠팡(3,086만), 알리(887만), 테무(829만), 11번가(740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소비자가 안심하고 해외직수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위해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을 마련한다」, '24.5.13.)

[해외직구제품에 대한 관계기관의 안전성조사 현황]

조사기관	조사 완료
산업통상부	▶ 448개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조사(2회) - 85개 위해제품 발견
관세청	▶ 310개 어린이제품 조사(2회) - 55개 위해제품 발견 ▶ 454개 접촉성 금속 장신구 조사(2회) - 139개 위해제품 발견
환경부	▶ 415개 접촉성 금속 장신구 조사(1회) - 49개 위해제품 발견
소비자원	▶ 137개 생활용품·어린이제품 조사(5회) - 64개 위해제품 발견 ▶ 구매대행 27개 어린이제품(완구) 조사(1회) - 10개 위해제품 발견
서울시	▶ 324개 어린이 제품 등 조사(18회) - 98개 위해제품 발견
경기도	▶ 70개 어린이제품 등 조사(1회) - 37개 위해제품 발견

자료: 산업통상부

현행법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나 ‘수입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³⁾,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3)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인 경우
2.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의2.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의 권고 또는 수거등의 명령을4),

5. 그 밖에 제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하기 위하여 불법·불량제품 유통 사업자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과 결과의 보관·열람,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 해당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리 또는 개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는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수 있음⁵⁾.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의 경우 안전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⁶⁾되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해한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해한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임.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의3(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 ③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관 전의 수입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에 대하여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제11조에 따른 제품 수거등의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1.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생략)

6) 수입물품은 국내 법령에 따라 일정한 기준 등을 충족하였음을 관련 기관에서 승인·허가·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요건을 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이나 개별 법령은 대부분 자가사용을 위한 물품에 대해 수입요건을 면제하거나 수입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해서는 반송·폐기 등의 국내 반입 차단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⁷⁾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57

7) [DD20418]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2025.09.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가결

(오세희·박성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함)

- 2025.11.06.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의결